

독립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6. 02. 11.

개정 2026. 03. 27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와이티엔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에 설치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, 정관,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의 독립성 확보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, 상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추천하기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수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여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1.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
2. 기타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2조(보고)

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(규정의 제정 및 개정)

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